울릉군 공고 제2026-621호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석포 농로확장

나. 위치 및 사업량 : 설계도서 참조

※ 사업설명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 금75,000,000원

예산금액	추 정 금 액			관급자재(관급)	기타 (폐기물처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도급)		
86,100,000원	68,181,819원	6,818,181원	11,100,000원	0원	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마감·개찰일시			견적서 개찰장소
제출	마감	개찰	
2026. 10. 8. 10:00	2026. 10. 13. 10:00	2026. 10. 13. 11:00	울릉군 입찰집행관 PC

※ 수요기간의 전산장애 및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 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하며, 전자방식의 견적서 제출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도급 :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사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에 위치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드 : 4994)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1)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 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

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평점산식 A값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품질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476,723원	880,042	666,053	426,125	87,519	1,416,984
	0	0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본 입찰공고,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내역서 제출 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고, 기성 및 준공(완료)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재무과(054-790-6131)

다. 설계서 열람 및 문의 : 총무과(054-790-6097)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9.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10. 견적서 제출 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에서 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우리 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견적서 제출 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울릉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실시대상 공사**입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및「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

※ 원도급과 하도급 전체 대상이며, 원도급사 직접 시공 공사도 포함합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별첨1~6(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내역서 등)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전자 견적제출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 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8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는 원단위로 작성 가능하나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아.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자.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90-6131), 기획감사실(054-790-6041) 및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유찰될 경우 재 견적제출이 가능하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견적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울 릉 군 분 임 재 무 관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울릉군(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울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군이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 부정한 취업 제공 등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울릉군과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릉군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울릉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울릉군은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울릉군(분임)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 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울릉군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릉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릉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릉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 사는 울릉군 「계약명 기재(예시:○○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릉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울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울릉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릉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울릉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울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릉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울릉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울릉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현장기술자는 철수하고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울 릉 군	발주부서 –	발주날짜 –
	발주내용 *공사명 적어주세요*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전문공사, 기타공사 2인이상 수의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4억원 이하) ☐ 종합공사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대표자명*	소속 *업체명*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날인 (사용인감 가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착공계(공사)

- 착공신고서
-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 직무분야 및 배치기준 확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5조)

 ※ 각 기술자별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자격증(면허) 사본 제출
- 공사 예정공정표,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 착공내역서, 착공 전 현장사진
-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및 통장사본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계약금액	공사기간	구분관리	지급확인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적용	적용
	30일 이하	미적용	적용
3천만원 미만	30일 초과	미적용	적용
	30일 이하	미적용	적용
전원 상용근로자 시행 공사		미적용	미적용

- 직접시공계획서

도급금액 / 직접시공비율	3억 미만	3~10억 미만	10~30억 미만	30~70억 미만
총노무비(직노+간노)의	5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서(현장가입)**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하도급법 제13조의2)
-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산법 68조의3)
-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대상공사)
- 계약이행통합서약서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준공계(공사)

- 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하도급 업체 준공내역서), 준공사진(전, 중, 후)
-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증빙서류 제출
- 노무비 지급내역 증빙자료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청구서(공사)

- 대금청구서
- 전자세금계산서(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하자보증서
-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경비의 사후정산 항목 등]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정산방법</th></tr>
<tr><td rowspan="8">A값
(7)</td><td>① 건강보험료
② 연금보험료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개월 이상 공사 적용</td><td colspan="2">- 현장명으로 가입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징구
☞ 보험료 납부액(근로자 50% + 사업주 50%) 중 <u>사업주 부담금 50%만 보전하며 차액 정산</u>
<table><tr><td>일용근로자</td><td>현장명 가입</td><td>납입금액 정산</td></tr><tr><td rowspan="2">상용근로자*</td><td>현장명 가입</td><td>납입금액 정산</td></tr><tr><td>회사명 가입</td><td>일할 정산**</td></tr></table>*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 포함
**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로 계산</td></tr>
<tr><td>④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 건설근로자법</td><td colspan="2">- 현장명으로 가입한 공제부금 납부확인서의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전자카드단말기 설치・운영에 드는 금액(공급가액 정산)
※ 적용제외
① 근로시간 1일 4시간 미만이고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상용근로자 ③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td></tr>
<tr><td rowspan="3">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현장근로자(직접노무자)의 안전보건]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td><td>안전관리자 인건비</td><td>- 근무일지, 급여 이체증</td></tr>
<tr><td>안전용품</td><td>-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지급대장(서명필수), 관련사진(반입사진, 착용사진)</td></tr>
<tr><td>안전시설비 등</td><td>-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관련사진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td></tr>
<tr><td rowspan="2">⑥ 안전관리비
[공사장 안전관리]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td><td>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비용</td><td rowspan="2">-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관련사진</td></tr>
<tr><td>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관련 비용 등</td></tr>
<tr><td>⑦ 품질관리비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
※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td><td colspan="2">- 시험성적서(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
※ 품질시험비: 토목 5억원・전문 2억원・건축 연면적 660㎡ 이상
- 영수증 징구(차액 정산 아님, 비용지출 확인용)</td></tr>
<tr><td rowspan="4">A값
외</td><td>◦ 고용・산재보험료</td><td colspan="2">- 현장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서 제출 시 계상액 전액 인정</td></tr>
<tr><td>◦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 부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 공급가액 기준 차액 정산</td><td colspan="2">- 사용내역서, 거래명세서, 관련사진
- (카드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이체증
- ex) 살수차, 물탱크, 방진덮개용 부직포 등</td></tr>
<tr><td>◦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td><td colspan="2">- 지급보증서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td></tr>
<tr><td>◦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td><td colspan="2">- 지급보증서 납부액 확인 후 차액 정산
※ 적용제외(착공신고서 제출서류 참고)
① 소규모 공사 ② 직불합의한 공사 ③ 1건 대여금액 200만 원 이하</td></tr>
</table>

※ 폐기물처리비[환경관리비 중 직접공사비 부분]

- 물량 변경분만큼 공사 기간 내 "설계변경" 하며 정산하지 아니함. (단, 사후원가검토를 통해 정산하기로 한 경우 예외)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미만**	- 폐기물처리확인서 / 계량증명서 /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5톤 ~ 100톤 미만**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 계량증명서 올바로 인계서 / 세금계산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구 분	품 목	인정사유
두부 보호	안전모	법령에 명시된 대표 보호구
안면 · 눈 보호	보안경, 용접면, 페이스쉴드	비산물·광선 차단 목적 명확
호흡기 보호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분진 ·유해가스 흡입 방지
청력 보호	귀마개, 귀덮개	소음성 난청 예방
손 보호	안전장갑(절단·방열·전기용)	위험요인 직접 차단
발 보호	안전화	낙하·관통·미끄럼방지
신체 보호	방열복, 방염복, 화학보호복	특수위험작업 필수
추락 방지	안전대. 안전벨트, 랜야드	추락재해 예방
시인성 확보	안전조끼(신호수)	장비·차량 충돌예방

※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상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항목]

구 분	품 목	불인정사유
작업보조	각반	법령상 보호구 범주 아님
복장류	작업복, 근무복, 점퍼	일반 복장
편의용품	무릎보호대, 허리보호대	개인건강보조
개인물품	양말, 안전화 깔창	보호구 기능 부족
신발류	일반 운동화	안전화 기준 미충족
소모품	일반 장갑	안전기능 미흡
보조용품	헬멧 이너캡, 땀받이	일반 보조품

[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보증률]

공사	세 부 공 종 명	책임기간	보증률	비 고
건축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년	3%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8조, 제70조, 별표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 건축물 중 ①·②와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3년	3%	
	② 아스팔트 포장	2년		
상·하수도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5%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3%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주의★ 각서 불가능)	2년	5%	
기타토목공사		1년	3%	
전문	① 실내건축	1년		

공사	세 부 공 종 명	책임기간	보증률	비 고
	② 토공	2년		
	③ 미장・타일	1년		
	④ 방수	3년		
	⑤ 도장	1년		
	⑥ 석공사・조적	2년		
	⑦ 창호설치	1년		
	⑧ 지붕	3년		
	⑨ 판금	1년		
	⑩ 철물	2년		
	⑪ 철근콘크리트 및 콘크리트포장	3년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2년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 보일러 설치	1년		
	⑮ 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⑯ 아스팔트 포장	2년		
	⑰ 보링	1년		
	⑱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⑲ 온실설치	2년		
전기	① 발전설비~ ⑥ 배전설비(가. 배전설비 철탑공사)	3~10년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⑥ 배전설비(나. 가목 외)	2년		
	⑦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년		
	⑧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통신	터널식 또는 개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등의 통신구공사	5년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7조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케이블 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나. 관로공사 다. 철탑공사 라. 교환기 설치공사 마. 전송설비공사 바. 위성통신설비공사	3년		
	3. 제1호 및 제2호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소방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6조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